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88
----------	------

2016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박마루 의원 외 17명

나.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라. 상정결과 :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마루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3)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4)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3) 기 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제정안 개요

-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하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조례 제정 개요

-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의무로 하는 근거를 담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마루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음

<표 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표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문화재보호법」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자체 중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여섯 곳이며, 여섯 개의 조례 모두 동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그 근거로 하고 있음

<표 2>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유사조례

연번	지자체	조례명	최초 시행일
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13.07.21.
2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14.10.21.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16.03.16.
4	전라북도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6.17.
5	경상북도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16.07.11.
6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0.20.

- 「문화예술진흥법」을 모법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에는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 4>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

<p>「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p> <p>제8조(문화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한다.</p>

장애인을 특정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

다. 조례안 체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개 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종류와 업무의 위탁(안 제5조부터 제6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의 설치(안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3〉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조번호	조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제2조	정의	장애문화예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름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범위
제6조	업무의 위탁 등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 기관 설치 등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	시행규칙	
부 칙		

라.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의 총칙규정은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시장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는 바,

안 제1조(목적)는 동 조례의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이에 대한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안 제2조(정의)의 경우, “장애문화예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총칙규정 중 하나인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효율성과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4년 계획으로 변경하여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가 동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진흥법」의 자치법규이므로, 행정력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음

또한, 최근 2016년 10월 제정된 충청남도의 조례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행계획을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나,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과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는 해당 조례 제8조에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시책을 강구한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있을 뿐, 장애인과 같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문화도시 종합계획’과 별도로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와 안 제6조(업무의 위탁 등)의 경우,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등 서울특별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까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마. 종합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서울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문화정책의 주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수립 등에 체계적인 규정 및 조례의 미비로 동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최근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박마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88
----------	------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1일

발 의 자 : 박마루 의원(1명)

찬 성 자 : 박운기, 성중기, 황준환, 남재경,
김용석(서초), 김경자(양천), 유 용,
주찬식, 남창진, 이명희, 진두생,
강구덕, 김창원, 김혜련, 유 청,
김선갑, 박양숙 의원 (17명)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 다. 기 타: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수 있다’에 따라 비용 발생 가능
- 같은 조례안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가능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조례안 제4조 제3항)
-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조례안 제5조)
-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지원기관의 설치 등 (조례안 제7조)

나. 전제

- 1)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
- 2) 실태조사는 기본계획수립 시점인 5년마다 1회 실시 전제
- 3)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은 1개소 설치로 가정
- 4) 인건비상승 및 물가상승 등은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발생 예상)

라. 방법

- 1) 실태조사는 5년마다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하며, 서울시 '10년~'14년 학술연구용역비 평균으로 산출
- 2)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비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운영 중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의 운영 및 사업비를 준용하여 추계 (※ 센터설치비용은 운영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5,187,39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실태조사 (제4조의3)	132,398	-	-	-	-	-	132,398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 설치·운영 (제7조)	1,011,000	1,011,000	1,011,000	1,011,000	1,011,000	1,011,000	5,055,000
	소계(b)	1,143,398	1,011,000	1,011,000	1,011,000	1,011,000	1,011,000	5,187,398
총비용(b-a)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 승 우
 예산분석팀장 이 철 희
 주무관 강 평 선 ☎ 02-3705-1279, e-mail(kangdan@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예술활동 지원사업 및 교육지원기관 설치·운영 비용

2. 세부추계내역

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 : 5년마다 1회 실시 (조례안 제4조의 3)

- 총비용 = 132,398천원
 - 연구용역비 : 132,398천원(연간비용)

※ '10년~'14년 서울특별시 학술연구용역비 건당 평균액 참조 (단위 : 천원)

구분	'10년~'14년 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당 평균액	132,398	174,398	140,620	146,020	134,864	90,851

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운영비 (조례안 제5조, 제7조)

- 총비용 = 5,055,000천원
- 연간비용 : 인건비 및 경상비 = 1,011,000천원
 - 인건비 : 408,000천원
 - 경상비 : 603,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합계	1,011,000	1,011,000	1,011,000	1,011,000	1,011,000	5,055,000
인건비	408,000	408,000	408,000	408,000	408,000	2,040,000
경상비	603,000	603,000	603,000	603,000	603,000	3,015,000

【참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민간위탁금 2016년도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국고	자체	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	1,000	11	1,011
○ 인건비	408		408
보수	408		408
○ 경상비	592	11	603
일반수용비	82	11	93
공공요금제세	49		49
특근매식비	7		7
임차료	3		3
시설장비유지비	26		26
차량비	6		6
복리후생비	36		36
위탁사업비	337		337
기타운영비	4		4
국내여비	4		4
국외여비	6		6
사업추진비	6		6
기관업무비	1		1
건설비	23		23
자산취득비	2		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